

예천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 2024.10.21]
(일부개정) 2024.10.21 훈령 제462호

관리책임부서명 : 총무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4-650-88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예천군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예천군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보건업무,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군수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군수는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① 군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며,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군수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며,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관리자는 영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천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1. 사용자 위원의 구성: 5명 이내

가. 사용자대표

나.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부서장

다. 안전관리자

라. 보건관리자

2. 근로자 위원의 구성: 5명 이내

가.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3. 간사 :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팀장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3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록 작성·비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2년간 보존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교육계획 수립) 관리책임자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교육
2.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특별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교육시기 및 교육시간·교육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7조(교육실시 방법)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안전관리

제18조(안전보건관리계획)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영 제70조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작업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인증) 해당 사업 부서장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사용 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검사 기관에서 안전인증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안전검사)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사업장에서 사용 중에 있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위탁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검사 대상, 방법 및 검사주기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검사 결과 발급받은 검사확인증은 해당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점검 시 불안정한 상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시정지시를 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직원은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해당 사업 부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수칙)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보건관리

제29조(작업환경측정)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업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과 진단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해당 사업 부서장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2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해당 사업 부서장은 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 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제한) 해당 사업 부서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34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하는 작업장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구) ① 해당 사업 부서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보건기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7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고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면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고조사는 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조사표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사고 보고서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등 관련 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재해분석 및 대책) 관리책임자는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무재해 운동)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다.

제41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42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훈령 제427호, 2021. 2.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462호, 2024. 10.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